##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11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임오경·김현정·한민수

임미애 · 김재원 · 서영교

장철민 · 조계원 · 박수현

한정애 · 이기헌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염령이 선포 이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경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헌법적인 경찰청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출입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내란에 동조함.

이에 경찰청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닌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독립적인 국회 경비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본회의의 정상적 개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내란이나 계엄 선포 등 국가 비상사태의경우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의장으로 하여금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경비대가 의장의 지휘와 감독하에 국회

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함과 동시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 상황에서도 원격영 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를 통해 비상시국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 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및 제144조의2 신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 나 변경한다.
  -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

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 야 한다.
-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4조의2(국회경비대) ① 회기 및 폐회 중에 국회 및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둔다.
  - ② 의장은 국회경비대에 필요한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④ 국회경비대의 조직, 업무 지역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
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

표결할 수 있다.

-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수 있다.
-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 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 영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44조의2(국회경비대) ① 회기 및 폐회 중에 국회 및 국회규 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 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둔다.
  - ② 의장은 국회경비대에 필요한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정부

<신 설>

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④ 국회경비대의 조직, 업무 지역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